

의안번호	제 353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3월 15일 (제 346 회)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제 안 자	건설소방위원장
제안연월일	2016년 3월 4일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353
----------	-----

제안연월일 : 2016. 3. 4.
제안자 :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제346회 임시회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3월 4일) 심사한 「충청북도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 대안으로 동 조례를 제출하고자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지속 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방의제21의 지역사회 차원 기구로 주로 환경보전의 역할을 수행하던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으로 확대해 경제성장, 환경보전, 사회정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충청북도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 현행 조례 제8조 및 제11조제2항 중 “협의회장”을 “상임회장”하여 협의회 사무처 운영과 협의회 지원방법 및 정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 상임회장의 선출방법 및 절차를 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협의회 기능 추가 (안 제2조)

다. 당연직, 위촉직 및 임기 등 위원회 구성 변경 (안 제3조)

라. 협의회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 신설 (안 제7조)

마. 협의회장” 을 “상임회장” 으로 함 (안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바. 상임회장 선출방법 및 절차를 협의회 규정을 통해 정하도록 함 (안 제13조)

사. 기타 용어정비 등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10조)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을 추진하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방의제21 작성·실천·평가 등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과 추진
2. 시·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지원과 협력
3. 정책의제 도출을 위한 여론수렴, 경제·환경·사회 등 분야별 정책과제

발굴 및 제시, 도정현안 및 갈등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

4.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홍보, 도민실천 및 국내외 교류·협력 활동

5. 도민들의 참여 확대와 민·관·산·학의 협력체계 강화

6. 그 밖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5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속가능한 충북 발전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민·관·산·학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가.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바이오환경국장, 균형건설국장

나. 11개 시·군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대표

2. 위촉직

가. 주민조직,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산업체, 학계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대표자

나. 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및 단체 관계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동회장) ① 협의회의 공동회장은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충북도의회 부의장과 위촉위원 중 선출한 3명 등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회장 중 1명을 상임회장으로 선출한다.

② 상임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5조(중전의 제6조)의 제목“(회의)”를“(총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회장”을 “상임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월에”를 “1회”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제2항 중 “협의회장, 부회장”을 “공동회장”으로, “25명”을 “30명”으로, “협의회장”을 “상임회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문 중 “협의회장”을 “상임회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협의회장”을 “상임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인 이내의 사무직원”을 “5명 이내의 사무직원”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문 중 “원할한”을 “원활한”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 및 제5호 중 “청풍명월21”을 “지방의제21”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협의회장”을 “상임회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사무처장과”를 “상임회장 선출방법 및 절차, 사무처장”으로 하고,

"따로 정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청풍명월21”을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3호 중 “청풍명월21”을 “지속가능발전”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대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u> <u>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u> <u>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도민의</u> <u>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u> <u>실천사업을 추진하는 충청북도</u> <u>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의 설치</u> <u>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u> <u>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기능) 충청북도청풍명월21</u> <u>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u> <u>다)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청풍명월21 실천항목의 효율</u> <u>적인 추진 및 도민, 기업, 행정</u> <u>기관, 사회단체 등의 참여유도</u> <u>2. 각종 오염행위 감시 활동 및</u> <u>환경보전 도민운동 전개</u> <u>3. 청풍명월21 실천에 대한 평</u> 	<p style="text-align: center;"><u>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u> <u>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u> <u>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u> <u>환경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u> <u>상을 위한 지방의제21을 추진하</u> <u>는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u> <u>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기능) 충청북도지속가능발</u> <u>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u> <u>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u> <u>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지방의제21 작성·실천·평</u> <u>가 등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u> <u>및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u> <u>한 전략 수립과 추진</u> <u>2. 시·군 지역의 지속가능한</u> <u>발전과 지방의제21 추진을 위</u> <u>한 지원과 협력</u> <u>3. 정책의제 도출을 위한 여론</u>

가 및 도민의 협조 체계 구축

4.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대안건의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나. 충청북도 바이오환경국장, 균형건설국장

2. 위촉직

가. 기업인, 학계, 민간단체 등

수렴, 경제·환경·사회 등 분야별 정책과제 발굴 및 제시, 도정현안 및 갈등사안에 관한 협의와 조정

4.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홍보, 도민실천 및 국내외 교류·협력 활동

5. 도민들의 참여 확대와 민·관·산·학의 협력체계 강화

6. 그 밖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5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속가능한 충북 발전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민·관·산·학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가.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바

환경운동에 관심있는 자
나. 협의회 추진사업에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

③ 협의회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회장은 협의회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협의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지
명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오환경국장, 균형건설국장
나. 11개 시·군지역 지방의제
21 추진기구의 대표

2. 위촉직

가. 주민조직,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산업체, 학계전문
가 등 각계각층의 대표자

나. 협회의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및 단체 관계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도의회 의
원 및 공무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4조(공동회장) ① 협의회의 공
동회장은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충북도의회 부의장과 위촉위원
중 선출한 3명 등 5명 이내로 구
성하고, 공동회장 중 1명을 상임
회장으로 선출한다.

② 상임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제6조(회의) ① 협의회장은 협의 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매년 3월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생략)

제7조(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장이 된다.

③ (생략)

④ (생략)

<신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협의회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5조(총회) ① 상임회장-----

-----.

② ----- 1회 -----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동회장-----
----- 30명 -----

----- 상임회장-----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분과위원회) 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상임회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제9조(사무처) ① (생략)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며, 사무처장은 협의회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협의회 의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 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풍명월21 실천항목의 추진
3.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안 건의
4. 각종 오염행위 감시활동 및 환경보전 도민운동 전개
5. 청풍명월21의 실천에 대한 평가 및 도민의 협조체제 구축
6. 환경보전과 건전한 개발을 위한 교육 홍보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9조(사무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상임회장 -----
-----.

③ -----
- 5명 -----
-----.

제10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협의회 의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 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의제21 실천항목의 추진
3.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안 건의
4. 각종 오염행위 감시활동 및 환경보전 도민운동 전개
5. 지방의제21의 실천에 대한 평가 및 도민의 협조체제 구축
6. 환경보전과 건전한 개발을 위한 교육 홍보

7. 기타 협의회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지원방법 및 정산)

- ① (생략)
-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회 규정) 사무처장과 사무직원의 임용·보수 및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7. 기타 협의회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지원방법 및 정산)

- ① (현행과 같음)
- ② 상임회장 -----

-----.

제13조(협의회 규정) 상임회장의
선출방법 및 절차, 사무처장-----

정한다.

관 계 법 령

[지속가능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7조(국가·지방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3.27.>

제21조(교육·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1.13, 2015.12.1>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1.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2.1>

참 고 자 료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는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풍명월21 실천항목의 효율적인 추진 및 도민, 기업, 행정기관, 사회단체 등의 참여유도
2. 각종 오염행위 감시 활동 및 환경보전 도민운동 전개
3. 청풍명월21 실천에 대한 평가 및 도민의 협조 체계 구축
4.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대안건의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나. 충청북도 바이오환경국장, 균형건설국장

2. 위촉직

가. 기업인, 학계, 민간단체 등 환경운동에 관심있는 자

나. 협의회 추진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

③ 협의회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회장은 협의회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 업무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협의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매년 3월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2. 협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협의회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9조(사무처) ① 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두며, 사무처장은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풍명월21 실천항목의 추진
 3.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안 건의
 4. 각종 오염행위 감시활동 및 환경보전 도민운동 전개
 5. 청풍명월21의 실천에 대한 평가 및 도민의 협조체제 구축
 6. 환경보전과 건전한 개발을 위한 교육 홍보
 7.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1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충청북도의 보조금은 반기별 신청에 의해서 지원한다.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의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 규정) 사무처장과 사무직원의 임용·보수 및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